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	공보과	1

(2013. 9. 2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6일

나. 제 출 자 : 유동균의원 외 7명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8월 27일

나. 의안번호 : 13-72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

동 제정 조례안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2조 ~안 제4조에서는 기본이념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(2)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.
- (3) 안 제6조에서는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,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.
- (4) 안 제7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,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함.
- (5) 안 제8조에서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공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.

[검토의견]

동 제정 조례안은 「국어기본법」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,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상위법인 「국어기본법」,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,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, 입법예고와 예산관련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절차상은 물론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